

육군 제2작전사령부 무열마을회관 교습소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운영 및 관리)

- ① 운영일은 낙찰 후 부대와 상호 협조하여 정한다.
- ② “사용인”은 무단휴업을 할 수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업이 필요할 시,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로 임시휴업 할 수 있다.
- ③ “사용인”이 운영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대”에 사전 통보하고 부대복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사용인”은 “부대”의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군사기밀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방보안업무 훈령, 보안규정 등 보안관련 법규
 3. 안전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
 4. 해당업종의 영업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
- ⑤ “사용인”은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사용인” 부담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사용인”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영업개시가 불가할 시 부대와 합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사용허가 시작일은 영업개시를 30일 이후로 하더라도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제2조(사용료의 면제 및 조정) “사용인”은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조정을 “부대”에 요청할 수 없다.

제3조(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제한사항)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허가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에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국가적 재난 선포, 전시예 준하는 사태 발생, 훈련·검열 등 시행
2. 대비태세 유지, 보안 등의 사유에 의한 야간 운영시간 통제
3. 급식 미취식 방지를 위한 병사 이용 제한

제4조(투자설비 등 처리) “사용인”은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까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 및 안전관리)

- ① “사용인”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위생 및 화재·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한 “부대” 또는 관련 행정관서의 시정 요구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식중독 사고, 화재사고와 같이 “사용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서 발급 이전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용인”은 부대가 주관하는 정기/수시 화재교육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제6조(제비용의 부담)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위해 “사용인”인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한 공공요금을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시설 공용면적에 대한 청결유지 비용은 점유면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초기투자(실내 설비 및 비품 등)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 실시한다.
- ⑤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전기·상수도를 사용함에 따라 매월 공용면적 비율에 따른 공공요금 및 계량기를 통해 산정된 전기·수도 요금을 국민은행 752801-00-2874 예금주 육군제2작전사령부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 ⑥ 납부기한일 전 “사용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부대의 공공요금 연체액 전체에 대한 책임은 “사용인”이 진다.
- ⑦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하여, 3개월 이상 장기간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료)의 상당한 금액을 연체시 부대가 수차례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요금이 미납되어 부대가 단전 및 단수 통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전기 및 상수도 공급을 차단 한다.

제7조(허가조건 및 운영협약 위반 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이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1차 위반 :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
2. 2차 위반 : 1차 주의 조치 관련 내용 불이행 및 기타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
3. 3차 위반 : 사용허가 철회

제8조(종업원 관리) “사용인”이 카페·제과점 운영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제9조(허가기간의 갱신) “사용인”은 허가기간 갱신을 희망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부대”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대”는 특수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사례,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부대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용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의 책임) “사용인” 및 “사용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해당 부대 보안규정 및 기타 군사보안 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여론조사에 대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가격 및 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가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치 요구할 시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 ① “사용인”은 “사용인” 귀책사유로 이용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대”에서 제공한 건물, 설비, 비품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협약서 체결)

- ① “사용인”은 운영일, 운영시간, 판매·서비스 품목 및 가격, 공공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부대”와 별도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부대”와 “사용인”은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운영협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 ③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협약서 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대”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합의 등에 관한 사항)

- ①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모든 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청약문서와 그에 대한 승낙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청약문서에 접수를 위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은 승낙의 뜻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합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문서로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두 합의
 - 2. 부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진 모든 업무 행위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제·해지)

-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대’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수정계약의 체결)

-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간 종료일 이전에 요청사유와 요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수정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조항의 해석)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정이 생긴 경우 또는 본 계약서 내용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주소 등 변경 신고) “사용인”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 즉시 “부대”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